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76
----------	------

2020년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므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9조)
 - 위원회는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2명씩 포함되도록 함.
- 3)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8조)
 -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나, 참석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함.
 - 회의가 끝난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회의록을 공개함.
 -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 당연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입법예고(20. 3. 19.~4. 8.) 결과(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및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위원회)가 개정¹⁾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부산, 울산,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고양시, 김포시, 시흥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반면,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림등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원녹지”, “도시녹화”, “가로수” 등의 심의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왔음.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법률 제14360호, 2016.12.2, 일부개정]

2) 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를 보면, 도시림뿐만 아니라 생활림과 가로수까지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가로수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가로수 조례”라 한다)에서 다루는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있음.
 - 현행 “가로수 조례” 제7조2(가로수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 바뀌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지만,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검토

- 안 제4조 및 제5조의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2항²⁾을 따라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최소인원의 경우 서울시 제출안은 법률에서 정한 6명보다 2명이 더 많은 최소 8명으로 정하였음.

2)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표 1] 도시림등 조례 심의위원회 구성(안)

구 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5조(구성) 제1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장:실본부국장)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장:환경정책실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장:시장 위촉임명)
제5조(구성) 제3항	1.도시림등 조성관리 전문가 2.관할지역 주민 대표 3.시민단체 추천자	1.도시림등 조성관리 전문가 2.관할지역 주민 대표 3.시민단체 추천자	1.도시림등 조성관리 전문가 2.시의회추천 시의원 3.시민단체 추천자

- 인원 구성과 관련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에서 각각 최소 2명 이상을 포함하게 되어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할 경우 최소 7명이 되기 때문에, 본 제정조례안의 위원회 최소인원을 8명으로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며, 본 제정조례안 또한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바, 회의 내용을 비공개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도록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76
----------	------------

제안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1. 수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며,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또한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삭제함.

2. 주요 골자

- 안 제10조제5항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참석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회의의 운영) ① ~ ④ (생략)</p> <p>⑤ <u>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참석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u></p>	<p>제10조(회의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서기는 회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및 폐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서명부
3. 심의 사항
4. 회의진행 또는 현지조사 상황
5. 위원 및 출석인 발언 요지
6. 심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담당관의 소속 담당 사무관 중 당연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이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을 발언하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당사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안건의 재상정) 심의 결과 부결·부동의 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부결·부동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대상지 또는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등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도시림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도시림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심의·자문안건과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위원이 아닌 관계인이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한다.